

지구 산림문제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정책방향 -

김 남 균*

1. 지구산림문제의 논의 배경

인류가 농경생활을 영위하기 이전에는 지구상에 약 62억ha의 산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1990년 현재 34억ha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산림감소현상은 특히 열대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 세계적으로 매년 15.4백만ha에 달하는 열대산림이 사라져 왔다¹⁾ (The Road from Rio: Moving Forward in Forestry. FAO, 1994).

영국의 환경전문가 Noman Myer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산림이 줄어들면 21세기 초에 이르러 열대산림은 뉴기니아, 자이레분지, 브라질의 아마존서부, 가이아나고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산림이라면 목재의 공급원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림은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할 뿐 아니라 생명체의 생존유지에 필수적인 산소를 공급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토양침식의 방지 등 각종 생명체의 생존상 필수불가결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세계 열대림의 37%를 차지하는 아마존 밀림

* 산림청 산림환경과장

1) 1990년 현재 세계 산림면적은 총 3,426백만ha로서 이중 열대림이 1,756백만ha, 온·활대림이 1,670백만ha임. 열대림의 연간 감소면적은 15.4백만ha인 반면 조림(신규조림 및 재조림)면적은 1.8백만ha(산림감소면적의 12%)로 90년 현재 인공림총 면적은 30.7백만ha에 불과하나 이들 산림은 개도국의 산업용재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온·활대림은 선진 산업국가에 1,430백만ha, 개도국에 240백만ha가 분포하고 있으며 선진산업국가의 산림면적은 열대림과 대조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FAO, 1990, 산림자원평가자료).

은 지구의 주요 산소 공급원으로서 우리 인체의 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산림파괴가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20-30%를 기여하였다고 한다.

지구상에는 총 1천만내지 8천만종의 생물자원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Wilson교수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들중 대략 140만종이 규명되어 있으나 최소한 1년에 약 50,000종, 매년 약 140종의 생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 생물자원은 각종 의약품 및 산업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보리, 옥수수, 쌀 3종의 유전자원이 식량의 절반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물종의 50~8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귀중한 자원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산림은 토양을 보전하고 경관을 조성할 뿐 아니라 맑은 물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자연의 '녹색댐'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울창한 산림은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해 주는 등 인류의 생존과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원이 되고 있다.

지구환경자원에서 산림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79년 열대림분체를 해결코자 열대림 행동계획(TFAP)이 수립되었으며, 1987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열대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열대림을 포함한 세계 모든 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하겠다. 1990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선진국정상회담(G7)에서 1992년까지 산림보전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임업가회의(World Forestry Congress)에

서 환경보전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여세를 몰아 1992년 리우회의에서 국제산림환경인 "산림원칙성명"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II. 산림원칙성명의 배경 및 주요골자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란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개최 2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한 회의라 하겠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는 110여개국의 국가 정상을 포함한 178개국 대표들이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동 회의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6,000여명의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범세계적인 회의였다.

언론에서는 지구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여한 점에 주목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이라고도 하며 회의개최지를 이듬하여 '리우회의'라고도 한다.

리우회의에서는 지구환경문제해결에 있어 기본원칙이 되는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산림원칙성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림원칙성명』은 지구상의 모든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산림분야의 기본현장이라 할 수 있다. 동원칙체택과정에서 선진국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기후변화협약이나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으로 채택코자 하였으나 목재수출에 의한 외화획득 및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산림벌채가 불가피한 개도국이 목재수출감소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동 협약 채택에 크게 반발하여 일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산림원칙성명으로 합의될 보게 되었다.

이 성명은 전문과 15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같이 국제 산림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지침서로서 향후 산림협약체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산림원칙성명』은 산림이 지니고 있는 중요하

고 다양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산림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경제발전과 모든 생명체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후대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및 정신적 소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국제관계와 국내적으로 조치할 사항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국제관계에 대한 규정으로는 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제반 편익을 우리 인류가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균형있게 분담하여야 하며 특히 개도국의 산림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재정 및 기술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 교역에 있어서는 국제협약에 반하여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므로써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산림의 환경가치를 내부화하여 국내 및 국제 목재시장가격에 반영해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생태계에 해로운 오염물질의 이동을 규제토록 하므로써 산림보전을 도모토록 하는 한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에 있어서는 자원보유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그 자원으로 부터 얻은 기술과 이익은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분배토록 하고 있다.

각국이 취해야 할 주요 지침으로는 산림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되 산림면적과 임업생산력은 적어도 현상유지되거나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황폐를 초래하게 될 재정·무역·산업·교통정책 및 기타 어떠한 정책이나 실행도 채택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써 국가정책중 산림정책을 우선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지침을 개발하고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며 산림생태계조사는 물론 교육, 연구, 훈련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생태적, 문화적, 정신적, 역사적, 종교적 기타 국민적 가치가 있는 산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산림은 갱신가능한 에너지 및 각종 산업원료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공급되고 있는 분야인 점을 주목하여 인공림을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최근의 논의 동향

국제사회는 '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산림원칙성명』이 채택된 후 이의 구체적 이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들중 주요한 논의동향은 대략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국 또는 같은 산림대에 속하는 국가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원칙성명』의 핵심내용일 뿐 아니라 지구산림문제해결을 위한 중심개념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해 나가며 그 동안의 산림관리내용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 및 지표'개발을 착수하게 되었다.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주관하여 '92년 열대림에 적용할 기준 및 지표가 개발된 이래 유럽지역국가들은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은 '몬트리올 프로세스'라는 지역국간 협력체를 통해 각각 '95년 1월 및 '95년 2월에 온·한대림에 적용할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한 바 있으며 남미의 아마존 유역국가들은 그들의 지역적 특수성을 내세워 '95년 9월 아마존유역 열대림에 적용할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세계적으로 열대림 및 온·한대림에 적용할 지속가능한 경영 기준 및 지표가 각각 2개씩 마련된 셈인데 이들 지역국간 협의체는 그들의 기준 및 지표를 적용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공동 해결하고 관련 기술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해 계속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구산림문제가 산림관리 그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림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상황과 특히, 선·개도국간의 첨예한 입장차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된 세계산림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Fores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WCFSD)를 들 수 있다. 세계산림위원회는 리우회의 직전인 '92년 5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전직수반회의(IAC)에서 세계산림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산림문제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세계산림위원회 조직을 후원키로 결정한 이래 '93년까지 조직위원회의 발족과 운영지침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95년 1월에 정식 발족하였다. 동 위원회는 '83년 UN결의에 따라 설립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개념을 제시한 "Our Common Future(일명 브란트란드 보고서)"를 UN에 제출한 바 있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를 모델로 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동 위원회는 '97년 개최예정인 리우회의 최종평가회의때까지 지구산림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유엔에 권고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이다.

셋째, 지구산림문제논의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엔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유엔은 리우회의 직후 '92년 12월 동 회의시 채택된 문건을 각국 및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리우회의 문건을 5년간 평가하고 '97년에 유엔주관하에 최종평가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93년부터 평가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95년 4월 개최된 지속개발위원회 제3차에서는 지구산림문제를 집중논의한 결과 '97년 최종평가회의때까지 지구산림문제를 타결 짓기로 하고 산림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IPF)을 설치하였으며 '95년 9월 유엔본부에서 1차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유엔차원에서 산림원칙성명의 이행방안을 다루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동 패널을 통해 산림원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국간 또는 산림대별로 개발되어 온 지속가능한 경영 기준 및 지표의 통합방안, 지속가능한 임산물을 증명하는 목재증명제도의 도입여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방안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등을 포함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산림협약제정문제가 집중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영국·인도 및 말레이시아·캐나다 주관의 Initiative, '95년 개최된 FAO 산림관련 각료회의 등을 들 수 있으나 유엔차원에서 지구산림문제해결을 위해 IPF를 설치한 이상 앞으로

산림문제는 동 패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그 동안의 대응현황과 앞으로 추진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산림문제는 이제 추상적인 논의단계를 지나 한층 구체화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 문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핵심과제임은 물론 국내적으로는 목재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임산업과도 직결된 사안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임정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95년 1월 국내산림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지구산림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환경과를 신설하여 관련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그 동안의 대응현황과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림협약제정에 대비한 대응방안의 강구이다.

산림협약은 기존의 『산림원칙성명』을 토대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동원칙 내용중 산림면적의 감소방지와 산림보전기준의 강화로 인한 임산물 교역량의 감소가 크게 우려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여건상 일부 산지의 타용도 전용이 불가피하고 국내 산림자원을 최대한 육성하더라도 현재의 목재자급도 약 10%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도 60% 이상을 상회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도 목재수요량의 부족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산림면적의 감소방지와 목재교역량의 감소 및 가격의 상승은 국내 산림정책이나 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산지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국토개발 및 경제발전상 요구되는 산지의 타용도 전용은 준보전임지를 중심으로 수용토록 하고 목재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해 지정되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는 전용기준을 강화하여 철저히 보전해 나가도록 산지이용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산림의 타용도 전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림면적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 유흥지는 산림으로 환원하는 한편, 도시

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가 부실한 산림은 지정목적에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질서 정연한 경영을 유도하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기능이 고도로 발휘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목재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자원을 꾸준히 육성해 나가는 한편 목재교역상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열대재의 소비를 줄여나가기 위해 현재 활엽수 위주의 합판산업 구조를 침엽수재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목재수요량중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40년까지 약 70만ha의 해외 임지를 확보하여 우리 손으로 조림한 목재를 들여오므로써 까다로워지고 있는 목재교역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조림사업은 목재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세계녹화에도 크게 기여하게되므로 국제적인 환경보호 압력에도 사전에 대처하는 효과를 가져다줄은 물론 향후 산림협약제정시에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산림협약제정협상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면적 감소방지와 목재무역, 그리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조장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림면적 감소방지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나 국가별로 산림면적이 각기 상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공간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고 산림율이 극히 높은 특수 여건이 인정되도록 강력히 요청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각국의 해외조림면적을 그 나라의 산림면적 증가요인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 지구녹화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여 우리 나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목재무역에 있어서는 자원의 주권적 개발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산림 파괴 특히, 열대림 감소의 주 원인이 상업용 벌채보다는 화전경작, 방목, 농지전용 등에 있음을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에 의해 생산된 목재의 교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임산물 교역을 규제함에 있어서도 먼저 과학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도록 하므로서 선진국어 이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에 있어서는 아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산림황폐방지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국제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합의 도달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 검토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협약제정에 대비해 마련한 대응전략을 기반으로 하되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상황변동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다

지구산림논의의 핵심과제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감안하여 작성하도록 산림법을 개정하였으며 산림청장은 국가산림관리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온·한대림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개발되어온 기준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③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④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⑤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흡수 기여도, ⑥기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앞으로 이들 기준을 토대로 우리 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인데 이를 위해 현재 국제적으로 마련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 및 지표를 분석중에 있으며 시안이 작성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지속가능한 경영 기준 및 지표를 확정하고 국가 산림관리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을 생태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므로 산림생태계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확보와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산림자원의 양적, 질적변화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감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향후 5~6년내에 GIS를 이용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1세기에 있어서는 산지이용, 산림경영 및 자원의 보호관리 등 산림행정 각 분야가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의사결정과 집행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95년부터 착수된 전국 산림입지조사를 '99년까지 완료하여 수치지도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임상도, 산림이용기본도 등 산림과 관련된 각종 공간정보의 전산화와 응용프로그램개발을 착실히 진척시켜나가고 있다. 또한 산림생태계관리모델개발을 위해 임업연구원에서 10대 주요 산림생태계에 대한 생물다양성조사와 생태계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의 생태적 관리를 위해 산림지리정보시스템에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지구산림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이다.

지구산림문제는 국내복재수급은 물론 산림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되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논의의 초기단계부터 적극 동참해 나가는 것이 국익을 증진함은 물론 지구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95년 1월 류종탁 박사(전 산림청장)를 세계산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동 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우리 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태 지역국가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협력체인 몬트리올 프로세스(회원국 10개국)에 우리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동 지역의 온·한대림에 적용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 및 지표를 공동개발하는데 기여해 왔다. 우리 나라는 '97년에 동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가간 협력체를 통해 경험과 기술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여 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몬트리올 프로세스 회원국이 보유한 산림이 세계 온·한대림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동 협력체의 역할 및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산림문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의 정부간 산림패널(IPF)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태지역전문가로 임업연구원의 관계관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관련대책을 차질없이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한·중, 한·러, 한·러 환경협력공동위를 통해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방지, 철새보호협정의 체결,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한 기술개발등산림환경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며 국제열대목재기구(ITTO)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지구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산림원칙성명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산림협약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산림협약이 제정될 경우 이는 국내 산림정책을 구속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에 의해 생산된 임산물교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게될 것이므로 국내 임산업과 경우에 따라서는 산림보전과 무역규제가 연계되어 우리경제전반에 주름살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문제는 우리세대의 복지를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 후손의 번영을 위해서도 지향해 나가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상응한 기여를 하도록 하고 국내 산림관리수준 또한 국제수준에 걸맞도록 관련정책을 착실히 개발해 나가는 것이 곧 근래에 회자되고 있는 임정의 세계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행정 각분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